

의안 번호	1335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3. 31.(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4. 5.(수)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4. 14.(금)

2.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촉대상자 정비(안 제2조제3항제2호)
 - (현행)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 (개정)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나. 상위법령에 위원회 구성 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안 제2조제3항제3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정비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 ⑤ (생략)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 비영리단체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